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규모 : 17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사업기간 : 협약일 ~ 25.2.28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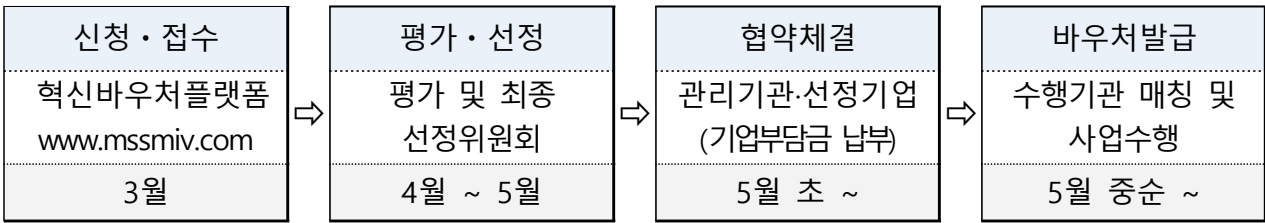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세부유형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 '24. 3. 11 ~ 3. 29.

○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별첨4]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지역자율형, 융복합, 중대재해) 중복신청 불가

□ 신청서류

구분	연번	서류명	내용
필수 ¹⁾	①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③	사업계획서	- ①지역자율형 · ⑨중대재해 바우처 : [서식 1] 작성
			- ②융복합 바우처 : [서식 1] + [서식 2] 작성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혁신바우처플랫폼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⑥	'20 ~ '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⑦	레전드50+ 참여기업 확인서 *지역자율형 바우처 신청기업 제출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발급본(서식3 참조)	
해당 시	⑧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재무제표 미제출 시)
	⑨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⑩	③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④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⑥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①, ②, ⑤, ⑦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각 1점) ²⁾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공통우대 가점사항 : ①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②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③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④협업승인 기업, ⑤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⑥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⑦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④)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⑤, ⑥, ⑧)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매뉴얼은 혁신바우처 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 참여기업 확인서 :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스캔본 첨부(서식3 참고)
- (⑨) 서식 4의 「지적재산권 및 인증 확인서」와 각 지적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⑩)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확인서 제출

2. 유의사항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바우처사업(수출바우처 등)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 예시) '수출바우처사업' 등에서 '홍보/광고(홈페이지 등)'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홍보지원 프로그램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30% 초과 잔액발생 시 협약시작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제재

잔액 규모	제재 조치
바우처 협약액의 30% 초과	차년도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금지
바우처협약액의 15% 초과~30% 이하	차년도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 심사 시 5점 감점
바우처 협약액의 15% 이하	제재조치 없음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관리지침 제36조(바우처 잔액처리)

3.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역자율형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② 중기부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선정기업
 - * [서식3] 지역특화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필수 제출
- (지원규모) 약 140억원 이내
 -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15
	제조혁신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 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산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15
	제품 시험·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마케팅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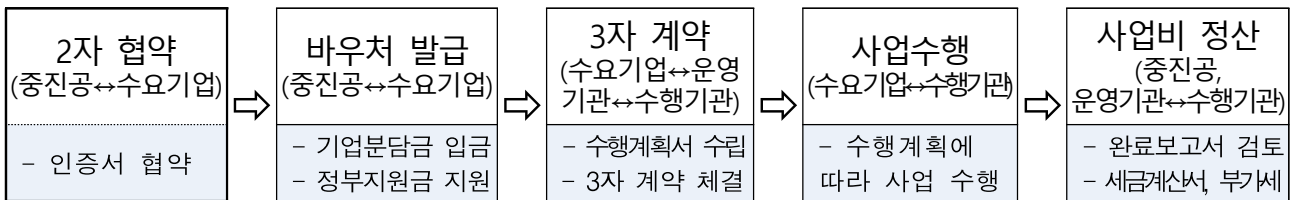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0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45%	55%
120억 초과 ~ 1,500억원 이하	40%	60%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5.2.28까지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선정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② 융복합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②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지원규모) 약 10억원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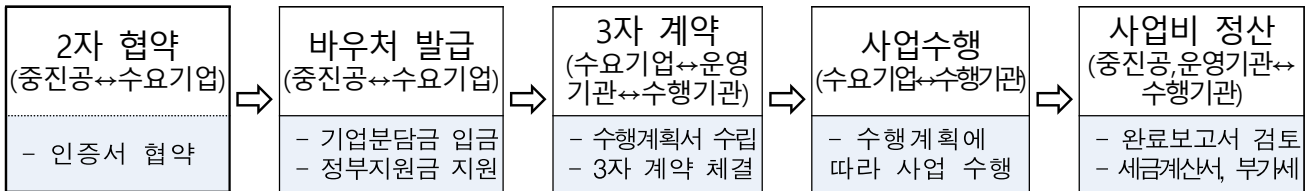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필수)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기술 지원 (선택)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15
	제품 시험·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선택)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5.2.28까지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③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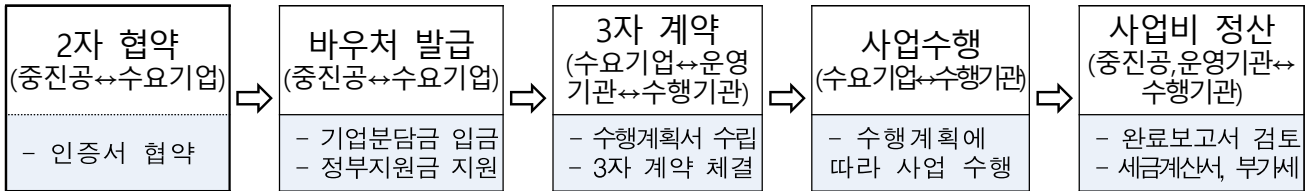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지원규모) 약 20억원
 -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3자계약)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필수)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관리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	20
기술 지원 (선택)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15
	제품 시험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선택)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5.2.28까지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4. 문의처

구분	전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별첨4]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서식 1】 사업 계획서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입력
(참여기업 참고용으로, 스캔본 업로드 불필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년 월	주요 내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대표자	학력	졸업연월	학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종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구분	업체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매출처	국내					개월	일	
						개월	일	
						개월	일	
	해외						개월	일
							개월	일

4. 주주현황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장상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의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참여이력 보유 기업)

참여연도		매출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참여 서비스 (프로그램)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수 기재
주요 성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추진한 협약과제 이행 결과와 이를 통한 경영 개선 이행수준, 개선 성과, 추가적인 사업화 등 주요성과 및 환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참여이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작성(필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6-2. 과제개요

<p>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p>

6-3.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4.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5.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22,23년)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천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 (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청 분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85%), 3억원~10억원(75%), 10억원~50억원(65%), 50억원~120억원(45%), 120억 초과(4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 최종 바우처(정부보조금) 지원금액은 사업예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추진일정

신청분야	'24년												'25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명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서식 2】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협업체 기본정보

구 분		기 업 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천원)**	생산품
협업체 구성	주관기업*					
	참여기업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기업 대상 실시)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협업 추진체계

기 업 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합 공동기술개발(제품) 설명	
	예)생산		제품사진	상세설명
	예)마케팅			
	예)디자인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협력모델	비즈니스모델	<input type="checkbox"/> B to B	<input type="checkbox"/> B to C	<input type="checkbox"/> B to G
	판로대상	국내		
		국외		

제0000-시·도명-00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소재지 :
선정기간 :

위 기업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광역자치단체의 장 ○ ○ ○ (직인)

【서식 4】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제출확인서(해당 시)

- ※ 인증 보유여부를 판단하여 목록 작성(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건만 인정)
- ※ 지식재산권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건만 기입
- ※ 등록권리자 확인 불가능한 서류 제출 시 해당 인증 인정 불가
- ※ 증빙자료와 상이하거나 허위 기재 등의 경우 평가 반영 제외

기업 정보

업체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 <input type="checkbox"/> 법인)	대표자명	
-----	---	------	--

인증 및 지적재산권 보유 목록

① **인증 목록**

인증명	보유 건 (건수기입)	인증서번호 (미해당 시 공란)	인증일자	유효기간
ISO9001	1	Q123456	2020.9.22.	2023.10.16
ISO14001	1	Q234567	2020.10.01	2023.10.15
KS인증	1			
합계	3			

② **지적재산권 목록**

구 분	보유 건	등록·출원번호	등록 권리자	유효기간
특허등록	1	10-1234567	(주)000	2025.3.1
특허출원	1	10-2023-0000000	(주)000	2030.10.1
실용신안				
상표권				
프로그램 등록				
디자인 등록				
기타 인증				

업체명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	--	------	-----------

별첨1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별첨2

제조 중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담배 제조업	C12	
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18.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19. 음료 제조업	C11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 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별첨3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20년 ~ '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0년.1.1 이전 설립 기업	- '20년, '21년, '22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0년 설립	- '21, '22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1년 설립	- '22년 매출액
'22.1월~'22.11월 설립	- '22년 매출액을 '22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2.12월 설립	- '22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3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3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전)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18.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1.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1.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첨4

중진공 소재지 및 관할구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05호	02-2106-7454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101~102호)	02-2023-4312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14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32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	032-560-2377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74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031-760-901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22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봉단원희캐슬 4층 431-434호	031-899-9115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23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3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033-649-9377
충청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26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201-206호)	044-860-8307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48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230-683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043-841-3600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3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빌딩 4층	063-460-9831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16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1-280-8043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77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32 053-606-8433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2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12호	054-288-7343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513호	053-603-332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A동 1층	051-630-7402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호	051-745-5923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052-276-8937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26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055-751-2903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064-754-5157

□ 관할구역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서울	서울	금천구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	서초구 ,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북부	중구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	인천	연수구 ,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경기	수원시 ,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	성남시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	안산시 ,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	화성시 ,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북부	고양시 ,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대전 세종	대전	대전시	
	세종	세종시	
충남	충남	천안시 ,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	충북	청주시 ,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	충주시 ,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음성군
강원	강원	춘천시 ,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영동	강릉시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북서부	군산시 , 고창군, 부안군	익산시
광주· 전남	광주	광주시 ,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전남	무안군 ,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	순천시 ,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장흥군
	제주	제주시 , 서귀포시	
대구· 경북	대구	대구시	고령군
	경북	구미시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고령군	고령군
	경북동부	포항시 ,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	경산시 , 영천시, 청도군	
울산	울산	울산시	
부산	부산	사상구 , 사하구, 강서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북구, 부산진구, 동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경남	경남	창원시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	김해시 ,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	진주시 ,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중진공 지역본부 소재 구역